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98
----------	------

발의연월일 : 2026년 7월 31일

발의자 : 이정연 의원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징계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맞게 징계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조문의 중복 및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윤리강령 또는 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징계사유로 명확히 규정함
(안 제17조 제1호)
- 나. 윤리강령 또는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별표2] 징계기준)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덧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다.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마.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 8. 3. ~ 8. 7.

○ 제출방법 : 방문(주말·공휴일 제외), 우편, 팩스, 홈페이지

○ 기재내용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의회운영 전문위원실)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의회)

- 전 화 : 031-790-6510

- F A X : 031-790-6529

- 홈페이지 : <https://council.hanam.go.kr/> (의안정보 → 조례안 예고)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또는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
2.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겸직 사임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4.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위반한 경우

[별표2] 징계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징 계 기 준(제17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검직신고 위반	○ 검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	경고
	○ 검직 거짓신고 - 미신고, 거짓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4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거짓신고 - 미신고, 거짓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1년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출석정지, 제명
	○ 범법행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개인정보 또는 직무 관련 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 수수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직무 관련 금품 등 수수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7. 그 밖의 위반사항	○ 겸직금지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 무단 회의 불참 (회기당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	제17조(징계 등) ----- ----- ----- ----- -----.
1. <u>검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u>	1. <u>이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또는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u>
2. <u>검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u>	2. <u>「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검직 사임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3. <u>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u>	3. <u>「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한 경우</u>
4. <u>의원이 하남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u>	4. <u>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u>
5. <u>의원이 하남시와 계약체결</u>	5. <u>그 밖에 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위반한 경우</u>
6. <u>관리인 등 검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u>	<u><삭 제></u>